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신규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4. 20. 법률 제18100호,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종합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는 등 인신매매등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점검, 점검결과의 이듬 해 사업계획에 반영 등 연도별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다.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는 등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추가하고,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 등 교육내용 및 방법,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인신매매등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판정하기 위한 인신매매등 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 11조부터 제14조까지)

사.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운영 수탁 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신고해야 할 자로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종사자 등을 추가로 정함.(안 제19조)

자. 사범경찰관리, 근로감독관 등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인신매매등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권익보호기관은 확인서의 발급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함.(안 제20조)

차. 인신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법률상담의 요건과 내용·절차, 의료비용의 지원,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비용지급, 귀국지원의 범위, 중복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카. 지원시설의 지정절차, 설치·운영기준, 지정 취소등의 요건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 지원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타. 지원시설의 지정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정하고,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업무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2.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신매매등 방지를 위한 기반조성

제2조(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종합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소관별 종합계획안과 이전 종합계획의 점검결과 등을 반영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 중 소관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계획 변경안을 작성

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법 제9조에 따른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사업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안을 매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안을 종합하여 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업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이하 “추진실적”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정책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추진실적을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점검 결과를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실적의 점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추진실적의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의 구성) 법 제9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외교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에 심의·조정 사항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해 정책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6조(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책협의회는 소관 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법 제9조제2항제9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피해자식별등 교육대상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종사자’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말한다.

제9조(교육의 내용과 방법, 위탁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종사자(법 제11조제1항 제1호, 제2호의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의 보수교육 과정이나 신규자 교육과정 등에 인신매매등 피해자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중앙인신매매피해자권익보호기관 및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 등 전문기관·단체 또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인신매매의 유형 및 특징
2. 인신매매등범죄의 주요 내용

3. 인신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4. 인신매매등 예방에 관한 사항

5. 인신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인신매매피해자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보호절차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제출)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근로감독관·선원근로감독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 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활용실적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판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판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판정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④ 판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인신매매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인신매매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도 교육청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보호·지원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4.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심사 및 이의신청 등 관련 업무를 담당

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지방고용노동청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6.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신매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인신매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법 제21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로서 피해자 보호·지원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9. 대학에서 사회학, 사회복지학, 법학, 행정학, 의학, 여성학 등의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인신매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 그 밖에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이 인신매매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판정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판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기업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기업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⑨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5항에 따라 위촉된 판정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판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⑩ 판정위원회 위원이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⑪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판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⑫ 판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①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피해신청인등”이라 한다)로부터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 요청 받은 경우 신고 접수 후 60일 이내에 판정위원회를 개최한다. 다만, 판정에 필요한 사실 확인이나 자료제공 등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또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판정위원회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판정의결서를 통해 확정된 심의·판정결과를 7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심의·의결 결과를

접수 후 14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자로 심의·판정된 사람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피해자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해당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에 통보한다.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7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피해신청인 등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등의 비공개)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판정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14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판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판정위원회의 판정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3.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 및 제30조에 따른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
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에 따른 출입국·외국인청장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의 장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법 제15조에 따른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법 제21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교육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 발급업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신고접수, 상담·사후관리, 판정위원회의 운영 등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 따른 피해자등에 대한 인신매매등 예방·방지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상담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위한 선임 등의 청구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신고의무자의 신고업무에 관한 사무
7. 법 제25조에 따른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 27조에 따른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34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무
11. 법 제36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시정조치 등 개선, 업무정지, 지정취소에 관한 사무
12. 법 제45조에 따른 피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또는 질문에 관한 사무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권익보호기관(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원시설(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응급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퇴소조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6조에 따른 피해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30조에 따른 피해자등에 대한 생계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31조에 따른 피해자들의 귀국지원에 관한 사무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피해자 및 인신매매등 행위자의 건강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은 범죄경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만 범죄경력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리,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법 제22조에 따른 피해사실 신고의 접수 및 통보, 긴급보호에 관한 사무

2.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법 제15조제1항제7호 또는 제2항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신고접수, 조사, 상담 등에 관한 사무

제17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 등)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기준·운영,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 자격기준의 충족 여부

2. 피해자권익보호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3.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여부

4. 기관·법인 및 소속 시설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 여부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보호·지원

제19조(신고의무) 법 제21조제2항제1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외국인력 상담센터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3. 「선원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4.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노숙인 시설

제20조(피해자등의 통보)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는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3조의 피해자식별지표등을 활용한 결과 인

신매매등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확인서 발급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우선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취학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해자등이 출석하여 학습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취학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는 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⑤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

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22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인신매매등피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기관”이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를 말한다.

④ 국가기관은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 민사소송·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형사절차상의 법률적 도움을 지원할 수 있되,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인 경우

2.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3.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상담 등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

률상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23조(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지급절차) ①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 또는 제33조에 따른 피해자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내역을 확인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치료비용의 지급을 의뢰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및 제44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 대상은 제외한다.)
2. 일반·상해진단서 발급비
3. 응급조치 입소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시·도지사는 치료를 받은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의료비 지원의 상한액, 적합성 등에 대하여 의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급하는 치료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제24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절차, 비용지급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

라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가족부장관 :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상급종합병원
2. 시·도지사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제1호의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에만 해당한다)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의료기관에 적합한 경우 여성가족부

령으로 정하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현황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란 신체적·정신적 검사 및 검진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따른 비용의 지급절차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5조(귀국지원) ① 법 제31조에 따른 귀국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단체 등이 운영하는 귀국 지원 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연계
2. 여행 증명서 준비, 교통편 예약 지원, 통역 및 피해자 동행 등 본국의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에 따른 편의 제공
3. 그 밖에 귀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법 제31조에 따라 귀국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 또는 외국인지원시설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귀국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밝혀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귀국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26조(중복지원의 제한)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법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지원시설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임대차 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원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지원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지원시설에 종사자할 직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지원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시설이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서식의 지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사실을

관할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지정기준(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 기준) 및 종사자의 수

2. 제1항제5호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④ 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지정을 받아 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또는 지원시설의 장이 변경된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서식의 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 증명서(지원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원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지원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지원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지원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

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원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지원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지원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지원시설 지정증명서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원시설 지정증명서에 적어 신청인과 관할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지원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및 지원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31조 각 호의 시설을 제27조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지원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9조(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

로 사용하거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법 제4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및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3.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입소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상해, 성폭력·성희롱, 폭언·협박 등을 통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시설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에 따른 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입소자가 다른 지원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 그 밖에 입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31조(지원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법 제41조에 따라 지원시설과 통합

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
4.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지원시설
5.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복지시설
6.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정복지나 사회복지관련 보호시설

제4장 보칙

제32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3.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4.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3조(업무의 위탁)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 및 실적 관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관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업무
 4.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운영의 위탁
 5. 법 제27조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업무
-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7조 지원시설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
 2.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수

제5장 벌칙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 자격기준(제17조 관련)

1. 구조 및 설비

가. 사무실

- 1) 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 2) 사무실은 모든 피해자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아동·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하여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화설비 및 피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 1) 상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상담 내용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2) 상담실은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보장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와 분위기를 갖추어야 한다.
- 3) 아동·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등을 상담할 때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도구를 갖추고 이를 비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4) 상담실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상담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장비와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 교육실

- 1) 59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피해자와 그 가족,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종사자 및 기타 관련자의 교육을 위한 전용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 2)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집기 등의 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라. 대기실

- 1) 9.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피해자, 그 가족, 통역사 등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대기실은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이용자의 연령대와 장애를 고려하여 편안한 구조와 분위기로 설치되어야 한다.

마. 응급보호실(임시보호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행위자로부터 분리한 피해자에 대하여 숙식제공

등 임시보호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되, 연면적이 9.9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화설비 및 피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운영기준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가. 장부 등의 비치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1)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2)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 3) 운영 일지
- 4)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 5) 예산서 및 결산서
- 6) 총 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장부
- 7) 금전·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 서류
-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 송신·수신한 문서철
- 9) 인신매매등피해자의 지원과 관련된 기록 및 서류

나. 회계

- 1)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과 그 밖에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받은 기부금품은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다. 그 밖의 사항

- 1)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은 인신매매등피해의 예방 및 피해자의 권익보호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2)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업무수행에서

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종사자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기관장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조에 따른 특수교육교원(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지원시설에 한함)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사회학, 법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분야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사회학, 법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간 관리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조에 따른 특수교육교원(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지원시설에 한함)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학사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팀원 (상담원)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조에 따른 특수교육교원(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지원시설에 한함) 5. 변호사 6. 학사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2]

지원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등(제28조 관련)

1. 입지조건

지원시설은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규모

지원시설 종류별 시설 규모는 다음과 같다.

시설의 종류	정원 규모별 연면적			
	7명 이하	8명 이상 10명 이하	11명 이상 15명 이하	16명 이상 20명 이하
일반지원시설	-	99㎡ 이상	165㎡ 이상	198㎡ 이상
장애인지원시설	-	132㎡ 이상	198㎡ 이상	264㎡ 이상
아동·청소년지원시설	-	132㎡ 이상	198㎡ 이상	264㎡ 이상
외국인지원시설	-	99㎡ 이상	165㎡ 이상	198㎡ 이상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70㎡ 이상	99㎡ 이상	165㎡ 이상	198㎡ 이상

비고: 지원시설의 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입소정원을 초과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 구성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수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구조 및 설비

가. 지원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나이별 특성에 맞도록 하고,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 및 재해 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지원시설은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편에 따라 2), 3) 및 4)의 시설을 겸용하거나 6), 7) 및 9)의 시설을 겸용할 수 있다.

1) 침실 및 거실

가) 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을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복도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침실 및 거실의 실제면적은 입소자 1인당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침실 1개의 수용인원은 4명 이하로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상담실

공개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숙직실

숙직을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식당 및 조리실

가)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목욕실

샤워설비 및 세면설비를 갖춰야 한다.

7)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10) 급수·배수 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취수원은 화장실 등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 더러운 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1)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 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장애인지원시설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운영기준

가. 건강 및 생활 관리

- 1)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나이, 성격, 심신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찰·지도하여야 하며, 보호의 경과에 따라 귀가조치 또는 다른 지원시설로의 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생활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면서 입소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시설의 종사자가 입소자와 함께 생활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지원시설에는 입소자(입소자의 자녀인 영유아로

서 지원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지원시설의 종사자 외의 사람이 거주해서는 안된다.

- 4)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소자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지역사회와 원활한 관계를 정립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입소자들이 원하는 지역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5) 지원시설은 입소자가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되, 그 훈련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시설 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관리규정

- 1) 지원시설의 장은 피해자등이 입소하거나 퇴소하는 등 입소자의 현원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정권자(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지원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지원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 가) 지원시설의 운영 방침
 - 나) 정원 및 직원의 업무 분장
 - 다) 지원시설의 입소요령
 - 라) 지원시설의 이용수칙
 - 마) 그 밖에 지원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내용

다. 장부 등의 비치

지원시설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 두어야 한다.

- 1) 관리에 관한 장부
 - 가) 지원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나) 직원 관계철(인사기록카드·이력서·사진을 포함한다)
 - 다) 회의록
 - 라)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결의에 관한 서류
 - 마)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 송신 또는 수신한 문서를 포함한다)
 - 바) 문서 접수·발송대장
- 2) 사업에 관한 장부
 - 가) 지원시설의 입소자 관계 서류(신상조사서, 건강기록부, 입소자·퇴소자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상담, 법률 지원의 내용 등)
 - 나)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 다) 운영프로그램 관리대장(프로그램 운영일지 및 평가 관련 서류)
 - 라) 종사자 교육·훈련 관계 서류
- 3)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 가) 총 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나)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 다) 예산서 및 결산서

- 라) 비품관리대장
- 마)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바)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 사) 후원금품관리 대장
- 아) 각종 증명서류

5. 종사자의 수

시설의 종류		지원시설 정원			
		7명 이하	8명 이상 10명 이하	11명 이상 15명 이하	16명 이상 20명 이하
일반지원시설	시설장	-	1	1	1
	상담원	-	2	2	2
	보조원	-	1	1	2
	총계	-	4	4	5
장애인지원시설	시설장	-	1	1	1
	상담원	-	3	3	3
	보조원	-	1	2	3
	총계	-	5	6	7
아동·청소년지원시설	시설장	-	-	1	1
	상담원	-	-	4	4
	보조원	-	-	2	2
	총계	-	-	7	7
외국인지원시설	시설장	-	1	1	1
	상담원	-	3	3	3
	보조원	-	1	2	3
	총계	-	5	6	7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시설장	1	1	1	1
	상담원	1	1	1	2
	보조원	-	1	1	1
	총계	2	3	3	4

비고: 지원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2)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입소자에 대한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 기준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로서 지원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인 경우
 - 나)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지정취소

3) 법 제39를 위반하여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법 제36조제1항 제3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4)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 제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시행령 제29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6) 법 제4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및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시행령 제29조 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7)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입소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상해, 성폭력·성희롱, 폭언·협박 등을 통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시설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령 제29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과태료처분 대상	근거 법령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0조제1항	500만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제1호	150만원	250만원	300만원
법 제46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제2호	150만원	250만원	3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연 락 처	(02) 2100 - 6457